##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8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 김성원·김선교·김종양

강선영 • 박충권 • 임이자

한기호 · 최수진 · 조승환

최은석 의원(10명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·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.

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,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%대, 태풍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%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.

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 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(안 제3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사전공사의 금지 등) ①	제34조(사전공사의 금지 등) ① -
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	
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	
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・재협	
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	
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	
기 전(공사가 일부 진행되는	
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	
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	
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	
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)에 환	
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	
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	,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	
지 아니하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	법」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
	<u>안전관리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